

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발표회

일시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주관 김경협, 민병두 의원실

인사말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기조발제	김경협 의원 민병두 의원
불공정사례 발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개혁안 해설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형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의 김경협 의원실 02.788.2021

식 순

<사회 : 이원정 팀장>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14:05	장내 정리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5	인사말	이학영 위원장 등
14:15~14:25	기조발제1,2	김경협, 민병두 의원
14:25~14:40	불공정 사례 발표	안진걸 사무처장
14:40~14:50	개혁안 해설1	이동우 변호사
14:50~15:00	개혁안 해설2	이형준 변호사
15:00~15:15	자유토론	
15:15~15:20	맺음말	사회자

차 례

인사말씀		이학영 위원장
기조발제	개혁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김경협 의원
	올바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방향	민병두 의원
사례 발표	제조업 및 건설업 불공정 사례를 중심으로	안진걸 사무처장
개혁안 해설	개혁안 1~3	이동우 변호사
	개혁안 4~6	이형준 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학영 위원장입니다.

「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발표회」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동주최를 해주신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와 발표회를 주관한 김경협, 민병두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3년 출범 이후부터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적폐의 상징인 ‘갑의 횡포’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계부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자 문제는 물론 판매유통·건설업계의 불공정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민생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해 해법을 찾아내왔으며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활동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원하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갑’과 ‘을’이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그간 노력해온 결과물을 담아낸 ‘불공정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안’을 소개합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송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대다수 일반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공정위의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다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대통령 탄핵은 우리사회에 공정이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한 개혁법안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데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1

개혁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김경협 의원(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기조발제1. 개혁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개혁안 1~3)

김경협 의원(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 들어가며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더 시급해진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 과제
-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적폐는 공정 거래질서를 무너트려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사고까지 야기하는 중요한 적폐청산 과제
- 중소기업,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는 원청업체의 갑질 타파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실효성 제고
- 이에 `14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추진했던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에 이어 이번 개혁안을 마련함.
- 6개 개혁법안에 대한 세부 설명에 앞서 개혁안 추진 과정과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개혁안 추진 경과

- `17년 1월: 김경협 의원,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과 함께 불공정 행위 근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 *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 국회연구단체(공동대표 민병두, 책임연구의원 김경협)
 - * 연구 용역 수행: 민변소속 이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형준 변호사, 차상의 변호사가 추진.
- `17년 2월: 연구보고서 제출 「공정사회를 위한 ‘갑’ 질타파 개혁안」
- `17년 3월: 개혁안 점검 간담회 개최
- `17년 4월: 6개 개혁안 발의 예정

▣ 주요내용(개혁안 1~3)

1.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안)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46.7%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언급되지만,
 - *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만이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소위 '증거의 편재'문제와, 관련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직접 명시된 서면만을 주요 증거로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가 그 원인으로 지적됨.
-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함한 청구의 인정여부에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 이를 통해 갑의 횡포에 손해를 입고, 법의 문턱 때문에 두 번의 상처를 입고 있는 중소 하청기업의 고충이 해결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

2. 국민심사위원회 설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의 다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함.
- 공정위 출신이 원청기업으로 이직 후 사실상의 영향력의 행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 * '16년 현재 공정위 출신, 대기업과 관련 단체에 재취업 인원만 20여명
- 또한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 심의, 의결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 및 위법성을 감시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공정위가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사실상 무의미하며, 소송으로 갈 경우 공정위의 부당성까지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공정위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 공정위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독을 가능케 하여 공정위의 법집행에 투명성을 높여 하청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

- 불공정행위는 사실상 하나의 원청이 다수의 하청업체에 피해를 주는 사건.
- 그러나 현행 제도인 공동소송제도(공동소송, 선정당사자)는 비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임.
- * 현행 공동소송제도는 사실상 개별적 소송 진행과 다름없거나 일일이 위임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과도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여 상대적 약자인 다수의 하청업체들의 피해 보상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임.

기조발제 2

올바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방향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

기조발제2: 올바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방향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

I

불공정 경제구조의 문제-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관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갑을관계 해소에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말미암아 중소기업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11년 이후 하도급 관련 분쟁은 126건에서 2016년 1,033건으로 약 820% 증가할 정도로 하도급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이와 같은 하도급과 관련된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오래 전인 198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구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법적인 장치가 오랜 전부터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거래관계에 있어 대기업 예측되어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 특히 그 피해가 심각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법의 준수 여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하도급분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II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제도 도입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의 필요성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미미함으로 인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그로 인한 비용보다 작아야만 실효적으로 작동하는데, 현행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과징금 감액사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최종 부과 과징금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임

2. 영업정지제도 도입 필요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영업정지명령제도를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일부에 도입하고 있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 영업정지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특히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파급효과가 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III

동의를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동의를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 이러한 동의를결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법에 본격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표시광고법 확대 적용되고 있음
- 동의를결제도를 통한 절차종료는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불법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자칫 사업자가 시정조치나 고액의 과징금,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의를결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함. 따라서 동의를결제도가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곤란하며, 사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충실하게 담보되어야 함
- 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동의를결 절차의 경우 공정위와 사업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이 확정되고 심의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당초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위와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등이 적절한 시점에 충분히 공개되어야 함
 - 동의를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의를결 절차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공정위의 동의를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의를결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동의를결의 내용과 함께 그 이행이 충실히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동의를결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 발표

제조업 및 건설업 불공정 사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불공정 사례 발표

■ 들어가며

일명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사례는 근래에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됐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가장 최근에는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주)한화가 태양광 설비 제조 하도급 과정에서 (주)에스제이이노트크의 기술을 탈취한 사례 등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음.

몇 개월 만에 또 여러 건의 ‘갑질’ 사례가 쌓였음. 올 1월에는 엘지전자 휴대폰 하청업체들이 구미에서 올라와 여의도 엘지전자 본사 앞에서 갑질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보도에 따르면, 엘지전자 중국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 여의도 본사 앞에서 갑질에 항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갑질’은 전국 방방곡곡 및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음.

이번에는 ▶하청업체에 관측 부담을 전가한 롯데마트 삼겹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사례 ▶하청업체에 손실을 전가했던 엘지전자 휴대폰 G5 하도급 불공정 사건, ▶물량빼돌리기 등 종합적 불공정 사례인 삼성전자-태정산업 불공정 사건, ▶건설하도급 불공정 사례인 GS건설-콘스텍 불공정 사건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려 함.

■ 하청업체에 관측부담 전가 - 롯데마트 삼겹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사례

1. 사안의 개요

(1) (주)신화는 2016. 1. 11. ‘시사매거진 2580’을 보도를 통해서 롯데마트(운영 회사는 롯데쇼핑(주)이다)의 갑질을 폭로하였다. 삼겹살데이에 삼겹살 100그램에 1천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비밀의 이면에는 롯데마트가 그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음. 그 외에도 롯데마트는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해왔다고 보도됨.

(2) 관측행사 빌미로 단가 후려치기

(주)신화는 2012년 7월경부터 롯데쇼핑(주)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돼지고기를 1400여톤을 납품함. 이 납품 물량 중 행사물량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함. 그런데, 삼겹살데이 전후 적용된 돼지고기 납품단가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됨.

(3) 물류비용 부당 전가

(주)롯데쇼핑은 (주)신화와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에서 (주)롯데쇼핑 물류센터에 납품 이후에도 각 쇼핑센터로 배송하는 물류비용까지 부당하게 공제하도록 정함. 공제된 물류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약 8-10%에 해당하는 31억여원에 달함. (주)롯데쇼핑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시점에 검수 과정을 거쳐 거래명세서까지 교부하였음.

(4)자문수수료 부당 공제

(주)롯데쇼핑은 위생점검 등 자문회사 A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신화도 A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사는 (주)신화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를 (주)롯데쇼핑에 제공함. (주)신화는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주)롯데쇼핑의 부당한 요구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비용을 지급하였는데, 그 수수료비용은 (주)롯데쇼핑에 대한 (주)신화의 납품대금에서 공제되었음.

(5) 계약조건 부당 변경

(주)신화는 (주)롯데쇼핑에게 2013년부터 종전 납품조건과 달리 납품물량 중 약 28만톤 상당을 세절 및 재포장 작업을 거쳐서 납품함. 하지만, 그 납품단가는 이런 추가 작업 없이 납품한 물량의 단가와 유사함. (주)신화는 추가 작업을 위해 약 6억원을 추가로 비용을 들임. (주)롯데쇼핑과 (주)신화는 납품조건 변경에 관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었음.

(6) (주)신화는 201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롯데쇼핑을 신고함. 공정거래조정원은 그해 11월 롯데가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약 48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1) (주)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빌미로 단가 후려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또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공정거래조정원은 (주)신화가 판촉행사 빌미로 단가 후려친 행위로 인해 약 9.6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함.

(2) 물류비용 부당 전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에서도 납품이 확정되는 시점이 납품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롯데쇼핑의 물류센터가 입고된 시점이 납품 검수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고, 납품 이후의 물류비용은 원칙적으로 (주)롯데쇼핑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가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공정거래조정원은 (주)신화가 이로 인해 본 피해액을 금 38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함.

(3)자문수수료 부당 공제 행위는

자문계약이 (주)롯데쇼핑의 성과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납품업자에게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4) 계약조건 부당 변경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하청업체에 손실전가 - 엘지전자 휴대폰 G5 하도급 불공정 사례

1. 사안의 개요

(1) 엘지전자는 세계적인 추세인 금속형 케이스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2016. 4. 1. G5를 전세계에 출시하면서 최초로 금속형 케이스를 도입하였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모듈형 타입을 도입함.

(2) 엘지전자는 G5 금속 케이스 제작을 위하여 1차하청업체3개사{(주)한라캐스트, (주)파인테크닉스, 중국 회사인 BYD)에게 제조 위탁하여 양산에 들어감. (주)한라캐스트는 대성코팅 주식회사 등 2차 하청업체 약 20여개사에게, (주)파인테크닉스는 엠에스메탈 등 20여개사(이하 '2차하청업체'라 합니다)에게 G5 금속 케이스 개발 및 제작을 재하도급 주었음.

(3) 2차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2차하청업체로 일하였었는데, 삼성전자가 2013.말경부터 휴대폰 제조 공장을 베트남으로 본격 이전 한 이후 국내 일감이 급감한 차에 2015.말경에 금속 케이스 형 휴대폰을 최초로 출시하는 엘지전자의 간곡한 합류 요청을 받고, 1, 2차 하청업체로 하도급관계를 형성함

- 엘지전자는 제작 과정에서 1차, 2차 하청업체들을 한 카톡방에 개설하여 직접 2차 하청업체에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고, 엘지전자의 간부들이 구미를 방문하여 1, 2차 하청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격려와 독려를 하였으며, 실적이 미진한 2차하청업체에게 전화회의를 소집하거나 소환하여 직접 생산을 독려하기도 하였음

(3) 부당한 대금 감액

- 엘지전자는 2016. 4. 1. G5 전세계 동시 출시를 하기로 하고 생산을 독려하였으나 경험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 물량이 부족하였음.

- 엘지전자 측 귀책사유인 설계 오류, 제작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제작 기구 문제로 양품수율¹⁾이 20~25%로 극히 낮았음.

- 1, 2차 하청업체들은 양품수율이 낮아서 매출액이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손해를 받았음

엘지전자는 양품수율이 현저히 낮아 1, 2차하청업체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2016년 상반기에 1차하청업체들에게 이미 제작 위탁한 제품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 1차하청업체가 대표의 발언

“엘지전자로부터 우리 회사도 단가인하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하청업체에게 단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2차하청업체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금을 감액해달라”, “엘지전자가 우리회사에게 같은 공정을 담당하는 중국업체의 단가보다 10불 정도 높으니 단가를 감액하라고 한다”

(4) 부당 납품 거절

엘지전자는 G5 출시 초기 물량을 조달하지 못하자 구매담당부서를 통해 물량 조달을 위해 양품 기준을 낮춰 1, 2차하청업체로부터 급하게 납품을 받았음

- 엘지전자는 그런 후 2016년 6월경 태도를 바꿔 자신의 품질검사부서 및 생산부서를 통해 납품 받은 제품에서 양품 기준을 하회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납품을 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1차하청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손실을 2차하청업체에게 전가함.

1) 검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생산비율

- 제윤경 국회의원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게 1, 2차 하청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6년 7월에 엘지전자와 1차하청업체는 일부 지급함. 하지만 1, 2차 하청업체의 손실을 회복할 수준이 못됨. 이런 방식으로 1차하청업체 한라캐스트는 2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840억원 중 1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5) 무리한 해외 동반 진출 요구

엘지전자는 2016. 1.경 베트남 하이퐁에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하청업체들에게 동반 진출을 요구함. 형식적으로는 요청하는 것이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매출이 결정적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아니라면 계속하지 않을 계획이 아니라면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었음.

- (주)한라캐스트도 엘지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이 높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주)한라캐스트는 2016년도 영업손실이 174억원(영업손실률 12.6%), G5 관련 영업손실 277억원(영업손실률 34.9%)에 이르렀고, (주)한라캐스트는 자산이 약 800억원인데, 위와 같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이전을 위해 2016년도 한해만 약 214억원(자산대비 약 27%)을 투자하게 됨.

(6) 부당 납품 거절(2)

- 엘지전자는 G5 실적이 나쁘자 2016연말 재고조정 정책을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2016년도 말 한라캐스트에 제작을 위탁한 제품의 납품을 받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
- 한라캐스트에게 발주량을 급격히 줄였는데, 그 결과 한라캐스트는 매출액 급감(월평균 110억원→25~30억원)하여, 결국 유동성 악화로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됨. 이로 인해 2차하청업체는 약 250억원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빠졌음.

2. 하도급법 위반

(1) 엘지전자가 하도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대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제2호)”에 해당하여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할 수 있음.

(2) 엘지전자가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반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3) 엘지전자가 1차하청업체에게 베트남 진출을 강요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의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4) 엘지전자가 발주한 물량의 납품을 거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음.

■ 물량 빼돌리기 등 종합적 불공정 사례 : 삼성전자-태정산업 불공정 사건

1. 사안의 개요

(1) 태정산업과 삼성전자의 하도급 협력관계

태정산업은 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에 콤프레샤를 단독으로 납품해 오던 협력업체임. 삼성전자 콤프레샤의 거의 90%를 납품하는 등 28년간 서로 협력하여 왔음.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같이 진출할 것을 요구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체로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지만 중국 소주와 무석에 공장을 설립하여 600여억원을 투자함.

태정산업은 중국에 투자한지 11년만인 2014년 흑자전환을 하고, 삼성으로부터 2015년 11월경 중국 공장 매각제안을 받았음. 삼성전자와 태정산업은 2016. 3.경 M&A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이 합의서에는 삼성전자가 태정산업의 매출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었음.

삼성전자는 매각협상 중에 중국 태정법인들의 발주물량을 45% 줄여 버리고 타 업체로부터 동종 제품을 납품 받음. 태정산업은 수주물량이 줄어들자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됨. 급기야 2016년 3월 태정의 중국 생산라인이 모두 멈춤.

삼성전자측 회계법인에서 지분 인수가를 81억원으로 대폭 낮춰 제시함

(2) 2014. 9.경 삼성전자 광주공장 1차 밴더 협력업체 모임(협성회)소속 20개사에 광주공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가절감에 사용하겠다고 200억원의 자금조성을 요청함(“자금조성 강요”).

<협성회 부회장의 문자메세지>

“전번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오늘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작금의 사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활가전이 협력사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원복합니다.”, “일전에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의 가부 진행결과를 고OO 상무께서 전달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담주 월요일까지 고OO 상무께 통보 바랍니다.”

태정산업 이외의 많은 회사들이 자금조성 요구에 따라 돈을 조성하였음. 태정산업은 자금조성에 협조하지 않은 후 삼성전자로부터 발주받는 물량이 급감함.

(3) 2015년 중국 소주와 무석의 태정공장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인하, 그 뒤로도 매달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삼성전자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 인하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매달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우도 있었음

(4) 2015년 태정이 납품하는 제품의 물량을 중국업체로 빼돌려 매출을 급감시킨 행위(소위 “물량 빼돌리기”)

삼성전자는 2015. 2.경부터 태정산업 중국공장의 납품물량이 줄기 시작하여 2015. 7. 경부터는 납품물량이 급감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물량을 현지의 다른 중국 회사에 돌린 것이었음. 태정산업은 삼성전자의 200억 자금 조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함.

(5) 2016년 2월부터 태정의 생산제품을 다른 협력사에게 금형 등을 제공하여 생산하게 한 행위(소위 “기술탈취” 행위)

삼성전자는 2016. 1.경부터 태정산업이 생산하던 제품에 대한 금형을 다른 회사에 제공하여 태정산업이 생산하던 제품을 2016. 3.경부터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삼성측은 현재는 태정산업의 제품 생산이 중단된 4월초에 금형을 다른 업체에 주어 4월부터 다른 4개 업체에서 생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금형은 태정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 공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금형개발비용을 삼성전자측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금형기술을 태정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제공하였음.

2. 하도급법 위반

(1) 자금조성 강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거나 이미 위탁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라면 하도급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3) 물량 빼돌리기 행위는 원사업자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물량을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보복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이므로 하도급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4) 기술탈취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건설하도급 불공정 사례 : GS건설-콘스텍 불공정 사건

1. 사안의 요지

1) GS와 콘스텍은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헤베당 39,000원의 낮은 단가로 거푸집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2) 콘스텍에게는 주차장동 공사를 맡기면서 주차차동에 설치된 거푸집 시스템을 철거하고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하도록 요구함.

그런데, 재래식 공법으로 시공하려면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려 줄 수 없다고 통보 함. 그러면서 재래식 공법으로 콘스텍 대신 공사를 하는 기린건설(주)에게는 단가를 헤베당 55,000에 책정해 주고, 콘스텍은 종전 시스템 신공법 단가인 헤베당 39,000원으로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를

하도록 요구함.

3) 그리고 종전 신공법에서 재래식으로 전환하면서 콘스텍이 입은 손실 16억 중에는 5억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줌. 그것도 57억원에서 46.5억원으로 일방 감액하였다가 (물량착오 이유로 47억으로 미세조정), 다시 42억으로 일방감액 한 후 보상액을 5억 원으로만 책정 47.2억원으로 공사금액 변경.

4) 재래식 공법은 자재와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공법 적용 시 단가로는 공사가 불가능한데, GS측은 자신들이 직접 시공하겠다고 콘스텍을 제끼고 인부들과 자재업체에게 직접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47.2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자, 스스로 48.7억원, 53.8억원, 55억원으로 계속 공사대금을 올려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였음.

5) 결과적으로 재래식 공법 전환에 따른 단가조정이 없고, 직접 시공 전환 후 직접공사비는 자신들이 직접 지급하고, 콘스텍의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2. 하도급법 위반

1) 거푸집 공사를 재래식 공법으로 동일하게 시공하는데도, 기린건설(주)에게는 헤베당 59,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콘스텍에게는 헤베당 39,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GS건설이 콘스텍을 제끼고 인부들과 자재업체에게 직접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47.2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자, 스스로 48.7억원, 53.8억원, 55억원으로 계속 공사대금을 올려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하도급대금이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합한 금액보다도 낮게 책정된 것이 확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3) 신공법을 재래식 공법으로 전환한 것은 GS건설이 도급계약상의 공정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기저기 공사를 벌이면서 계약과 달리 공정순서대로 신공법에 의한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에도 그것을 수급사업자인 콘스텍에게 책임을 돌리고 종전단가대로 재래식 공법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

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4) 그 외에도 2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가 다시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11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5) 공법변경 등의 추가공사 시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가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등에 불이익을 줄 것을 고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GS건설이 주도하여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하도급대금 변경에 동의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측면이 있음.

6) 콘스텍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신고를 하고, 공정위가 공정경쟁조정원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자, GS건설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조정이 성립한 상태로서 스스로 범위반에 대한 인정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음.

개혁안 해설 1~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안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안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I.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피해배상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1. 핵심 문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회복, 즉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여 법위반행위의 억지와 법위반 행위자의 처벌, 법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환수하고자 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원이 법위반 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위반행위의 억지와 법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극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의미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① 적용 대상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 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② 원고의 선택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2항)

③ 배심원의 수

제11조(배심원의 수) ① 청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변론준비절차에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10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41조(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와 지정 등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내지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6 평의 · 평결 · 토의 등

제42조(재판장의 설명 · 평의 · 평결 · 토의 등)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II. 전관예우 및 부정한 청탁의 원천봉쇄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1. 핵심문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준사법기관으로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위 조치의 공정성, 투명성, 적절성, 위법성 등에 대한 감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국민들은 청탁, 전관예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심의 과정의 적정성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국민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① 심사청구의 대상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신고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및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49조 제3항의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국민심사위원회에 그 조사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3조의2 제1항).

② 심사기간

국민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53조의2 제2항).

③ 위원회구성

국민심사위원회는 재조사신청사건별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의 국민심사위원과 위원회 진행을 위한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한다(법 제53조의2 제3항).

④ 심사 및 처리

국민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사안에 대한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 여부, 시정조치 부과 여부, 과징금 증감 여부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53조의2 제4항).

수 실효성 확보

제1항의 청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법 제53조의2 제5항).

Ⅲ. 다수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1. 핵심문제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상의 절차는 이렇나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기본법 등의 집단분쟁해결절차는 소송유형, 대상사건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① 일반적인 허가 요건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불공정집단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불공정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②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제39조(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참가신청(opt-in) 방식과 제외신고(opt-out) 방식 중 제외신고 방식 선택

③ 인지대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② 불공정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③ 불공정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의 인지액 상한은 1,500만원으로, 상고심의 인지액 상한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④ 변호사 보수

제47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5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36조 (손해배상의 특칙) 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증거조사의 결과 또는 제35조에 따라 정해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서 인정한 손해액을 하한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2.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⑦ 통지방법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혁안 해설 4~6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안

이형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안

이형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IV. 원□하도급 사이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1.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

가. 원사업자(대기업)는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중소기업)를 선정□감독하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갖게 되며, 실제 대표적 하도급 분야인 건설 분야 하도급 분쟁의 절대 다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대금 및 근로자임금 갈등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특성 상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나.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대기업(원사업자) 사이의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법이 제정되었다.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하도급법이 제정된 이후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발주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 상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적으로 이

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 12. 중소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¹⁾에 따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고,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였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14.7%), 선금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을 지목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라. 지금까지의 하도급감독은 감리 등이 담당해 왔으나 감리업무는 하도급 규정 준수보다는 건축법 등 일반규정의 위반 여부 감독에만 치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감리 등은 공사 규모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발주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하도급거래에서 감리업무만으로 (하)수급업자를 보호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결과, 2017. 1. 19.

2. 해결방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공정한 지위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원사업자(내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구조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하도급감독관 제도는 국가 또는 국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계약 중 하도급계약금액이 50억 원 이상(지방자치단체 5억 원 이상)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선정하는 하도급감독관이 하도급거래가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주자·원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가. 하도급감독관 제도 도입

제22조의3(하도급감독관)

- 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감독관을 둔다.
- ② 하도급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업자가 지정한다.
- ③ 그 외 하도급감독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하도급감독관의 권한

제22조의4(하도급감독관의 권한) ① 하도급감독관은 월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에 하도급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하도급감독관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기간 종료 후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V. 불공정행위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위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1. 문제의식

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면 기업이 불법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에 비해 적발 시 납부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OECD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관련매출액의 약 15%에서 20%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조항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적발 시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액수 보다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속적인 탈법행위의 유혹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²⁾

나.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산정해 최대 90%까지 감액하는 등 과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실태분석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징금 산정과 감액을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다. 과징금 부과 및 감면 실태³⁾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2013년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조사하여 과징금 조정단계별로 감면 및 가중 사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최종 과징금 총액은 2조 3,256억 원으로 최초산정 과징금 기준액 4조8,923억 원의 47.53%에 불과하였다. 즉, 최초산정 과징금 기준액의 52.46%가 조정과정 중 감면된 것이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의결서에 기록되지 않은 자진신고자 감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감면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이후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대폭 감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최종 과징금 총액이 최초산정 과징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근거도 의결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징금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도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라. 낮은 과징금 부과율⁴⁾

낮은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전혀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

3) 이은정, 앞의 글 참조

4) 경제정의실천연합, 앞의 글 참조

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의 기본과징금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6%이며, 여기에 51.4%의 감경률이 적용되어 최종 부과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고과징금 부과기준 10%가 전혀 실효성 없는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2. 해결방안

가. 영업정지 제도 도입

1) 현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 등이라고 함)의 부과 및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등은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교하여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특히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파급효과가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한 기업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우월한 지위에서 과징금 등의 부과를 감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과징금 상향

1) 4년 평균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낮고 관대한 감경조항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본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대폭 상향해야 하고, 감경조항의 정비를 통해 감경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2) 최종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3%이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낮고, 부당이익 환수 효과도 없다. 담합의 경우 소비자피해액이 관련매출액의 15%~20%라고 볼 때, 최종 부과율이 1.3%이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이 피해액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여 영업정지를 부과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정위의 최고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규정된 각 관련매출액의 2배,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상한액의 2배로 각 상향시켜야 한다.

3. 법안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0장의3 영업정지 등

제55조의9(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 제23조의3, 제29조 제1항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6조, 제22조, 제24조의2, 제31조의2에서 각 규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VI. 피해기업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개선

1. 문제의식

가.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운영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공공이익의 보장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집행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의 미흡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동의의결제도를 올바르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⁵⁾

나. 공정거래법의 특징 중 하나인 직권규제주의(Amtsermittlungsprinzip)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의의결을 통한 절차종료는 범위반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불법판단을 유보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영미의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범위반행위로 나아간 사업자가 자칫 시정조치나 고액의 과징금,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의의결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의의결제가 범위반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내용적으로 범위반행위의 시정 및 피해구제가 충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권규제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의의결제는 신고인이나 경쟁사업자, 피해자 등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들의

5)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7. 28.

이해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단순히 동의의결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비롯하여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해결방안

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제도 폐지

공정거래법은 동의의결을 결정하기 이전에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의3 제3항). 그러나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범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미 동의의결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견 고발대상도 아닌 비교적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협의란 ‘합의’와 달리 자칫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 마칠 수 있어 양 기관간 분쟁의 소지는 여전해 보인다. 특히, 2011년 법개정 당시 공정거래법 제안이유를 보면, 범위반여부가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점에서 동의의결제의 취지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법이 고발 의무나 고발요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동의의결 시에는 예외 없이 검찰총장과 사전협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당초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오히려 절차의 경제 등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의의결

전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나. 공정위의 동의를결 직권개시

공정거래법이 범위반 여부로 조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게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직권으로 동의를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동의를결로 절차를 종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직권으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의를결제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하는 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비추어볼 때, 조사절차 개시 후 범위반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의 경제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동의를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직권개시 조항을 신설한다.

다. 사업자의 동의를결 취소권 제한

그밖에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동의를결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동의를결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법 제51조의2 제1항 3호), 취소사유나 기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원회의나 소회의가 동의를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절차의 경제와 동의를결 신청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를결절차 개시 후 1개월이 지

나면 사업자가 동의의결신청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라.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1) 공정거래법은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동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51조의3 제2항), 이는 단지 동의의결의 내용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데 그칠 뿐 절차 자체에 참여자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즉,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은 동의의결 개시 단계부터 결정 단계까지 철저히 배제된다.

2) 동의의결은 사업자에게 시혜적인 제도이지만,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인 등의 절차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고인 등이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이에 사업자가 이 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인과 합의를 하고 재발방지의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마. 동의의결 불이행 시 제재수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의4 제1항 3호, 제51조의5 제1항). 유럽이나 독일의 예와 같이 동의의결의 불이행 그 자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사전규제의 성격이 강한 기업결합 규제에서는 타당하나, 이미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을 조기종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의의결에는 맞지 않고, 무엇보다 동의의결 또한 시정조치에 준하는 공정위의 처분으로서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적어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동의의결의 취소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출액의 1만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원을 매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 신설한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제도 폐지

제51조의3(동의를결의 절차)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의 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공정위의 동의를결 직권개시

제51조의2(동의를결)

- ④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 중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 사업자의 동의를결 취소권 제한

제51조의2(동의를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동의를결절차 개시 후 1개월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라.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제51조의2(동의를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고인과 협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를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 동의를결 불이행 시 제재수단

제51조의4(동의를결의 취소 등)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를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